

## 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-64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,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26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#### 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# 2. 행정처분(예정) 대상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유채현	1994.○.13.	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70-****-6828	통신 가입
2	권순기	1980.○.10.	경기도 수원시 권광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	7,500,000	010-****-0844	쇼핑물
3	주식회사 씨앤엘코리아	110111- 8279170	서울특별시 강북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1670-**-84	로또

#### 3. 게재(게시)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#### 4. 의견제출기한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# 5. 의견제출장소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

(☎ 02- - 6735- - 8130 / FAX 02-6735-8144 / E-mail : yjwon222@korea.kr